

#18. 기업을 위한 2024 년 개정세법 분석(3)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안녕하세요. 김란 세무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 이어 **2024 년 개정세법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 지원과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이 주목해야 할 개정 및 신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은 경우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최대 600 억 원 한도)에서 10 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 억 원 초과분은 20%)의 저율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text{증여세} = [\text{가업자산상당액 1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2} - 10 \text{ 억원}] \times 10\% (20\%)^3$$

1)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2) 가업영위기간 10 년 이상 300 억원, 20 년 이상 400 억원, 30 년 이상 600 억원 한도

3) 과세표준 120 억원 이하 10%, 120 억원 초과 20%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가. 가업요건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① 중소기업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 천억원 미만일 것

② 중견기업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 조 제 4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증여일 직전 3 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 천억원 미만일 것

나. 증여자요건

- ① 증여일 현재 10 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60 세 이상의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 ②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법인의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 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다. 수증자요건

- ① 증여일 현재 18 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 ②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일반세율(10~50%)로 증여세를 재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

나. 증여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 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 ②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③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단,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 ④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단,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나 상장요건에 따른 처분은 제외)
- ⑤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단, 시설투자사업규모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실권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 의 6, 상증법 §71, 조특령 §27 의 6)

가. 저율과세 구간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 시 과세표준 60 억원 이하는 10%, 60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0%저율과세 구간을 12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하여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는 10%, 1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나.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하였습니다.

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소득령 §17 의 3, §18)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대학의 교직원,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출원·등록·실시 등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500 만원에서 연 700 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세움택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Tax

김란 세무사

CTA

ran.kim@seumlaw.com